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전국 병원장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(약제 세부사항, 세부사항, 선별급여)

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2, 73, 74호(2024.4.29.)
2.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-55호, 2024.3.28.)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71호, 2024.4.26.) 및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9호, 2024.4.2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합니다.

가. 고시 제2024-72호(약제 세부사항)

- (신설) [142] Tralokinumab 주사제
- (변경) [일반원칙] 골다공증 치료제, [142] Abrocitinib 경구제, [142] Baricitinib 경구제, [142] Dupilumab 주사제, [142] Upadacitinib 경구제, [322] 철분주사제, [399] Denosumab 주사제, [399] Zoledronic acid 5mg/100ml 주사제, [439] Aflibercept 주사제

나. 고시 제2024-73호(세부사항)

-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(5.1.)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정비

다. 고시 제2024-74호(선별급여)

- 항목 분류 정정(검사료→기능검사료) 및 항목 순서 조정

붙임 : 고시개정문(고시 제2024-72, 73, 74호), 질의응답(고시 제2024-72, 73호), 별지(고시 제2024-72호) 각 1부.

※ 붙임자료 다운로드 :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사원 김승재 제2국장 정교숙 제1국장 류향수

시행:보험 제 2024-156 (2024.04.29)

우편번호 04165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
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09 (대표FAX: 02-705-9209) E-mail : sjkim@kha.or.kr